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2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 사업내용

- 이전 기술의 유형에 따라 ①신탁기술, ②파산기술, ③일반기술로 구분하여 기업이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① 신탁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제35조2제6항의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된 기술

② 파산기술: 기보가 회생법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중개를 실시한 파산기업 보유 특허

③ 일반기술: 신탁기술 및 파산기술을 제외한 기술

□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26. 3. 12. (목) ~ '26. 11. 30. (월) (264일간)
-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사업비 지급시기(예정)
1차	'26.5.18. ~ '26.6.12.	'26.7월
2차	'26.11.1. ~ '26.11.30.	'26.12월

□ 지원규모 및 예산

○ (지원규모) 연간 100건 내외

○ (지원예산) 80백만원 내외

* 지원규모 및 예산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근거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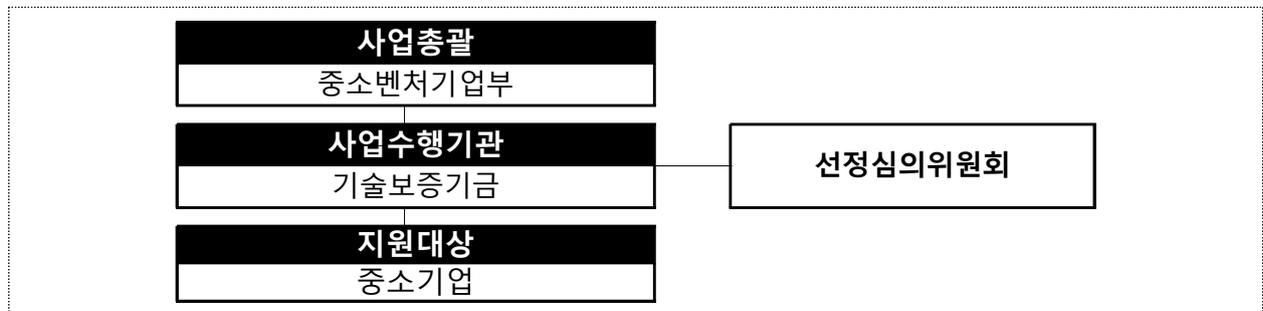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법(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요령(고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관리지침

□ 추진체계



○ (사업총괄)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사업 운영, 지원기업 선정·평가*, 사업비 집행, 사업 성과 관리 등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보”)

* (선정심의위원회)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중개수수료 납부 후 사업기간* 내 해당 기술의 권리가전이 완료된 중소기업

* (사업기간) '25.12.1.~'26.11.30.

- (신탁기술) 「기술이전법」 상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위탁자*)

* 기술신탁관리기관과의 기술신탁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신탁한 권리자

- (파산기술) 「파산기업 보유 특허 매각 공고」 를 통해 파산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

- (일반기술)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

* 「기술이전법」제10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통상부 지정 민간기술거래기관

**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사업수행기관(기보)의 공동중개 포함

□ 제외 대상

- 신청기업 또는 대상기술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선정 후 비용 지급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③ 대상기술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용실시권 등 독점적 실시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거나 출원 중에 있는 기술 (단, 기술보유자 동의하에 전용실시권이 이전된 건은 신청 가능)
- 질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 소송, 무효심판, 취소신청, 강제집행 등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 권리자가 다수인 기술(단, 공동권리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아 신청 가능)
- 연차등록료 미납중이거나, 납부기한이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기술

-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법상 창업 여부와 무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1. 일반유희주점업, 2. 무도유희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기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매수자가 사업화 주체(기업)가 아닌 일반 개인(자연인)인 경우 또는 신청기업과 관계기업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관계기업의 정의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관계기업 ③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의 집단에 소속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4 지원절차 및 세부사항

□ 지원절차



* 상기 일정 등은 기보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술 유형별 중개수수료 지원내용

구분	신탁기술	파산기술	일반기술
중개기관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	파산기술을 중개한 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법」상 민간 기술거래기관
지원범위	중소기업이 납부한 중개수수료(면세) 전액 또는 일부	중소기업이 납부한 중개수수료(부가세 제외) 전액 또는 일부	중소기업이 납부한 중개수수료(부가세 제외) 전액 또는 일부

- **(지원범위)** 기술이전 계약 후 사업기간 내 해당 기술의 권리가전이 완료된 경우,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금액 이내
 - 단, 일반기술은 지원요율 최고 한도 6.5% 적용 **참고1**
- **(지원한도)**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최대 1천만원 이내
 -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1천만원 초과분 또는 지원요율 최고 한도 초과 시 그 차액은 신청기업이 자체 부담
- **(지급방법)** 사업기간 내 2회(7월, 12월) 선정기업에게 지급
 -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번에 따라 지원하며,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업 조기종료 가능

5 사업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 주체별 사업 신청방법

신청구분	신청방법
일반기업(단독·각자대표)	온라인 신청
공동대표기업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일부 서류 원본 우편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참고2**
 - 제출서류 연번 별로, 스캔 파일(PDF) 각각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 (유의사항)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제반서류의 제출일이 상이한 경우, 신청기한 내 신청서와 제반서류가 모두 유효하게 제출(도착일 기준)된 날을 신청일로 봄
- **(공동대표기업)**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중 연번 7, 8, 9, 10 서류는 공동대표 2인의 법인인감 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원본 제출
 - 원본제출 서류의 경우 신청 마감일 전 영업일(1차: 6.11., 2차: 11.27.)까지 기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온라인/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선정심의 대상 기업’으로 인정하며, 연번별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본 건 선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 중개기관의 정책상 서류를 신청기업에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 기보에 직접 제출 가능하며, 중개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또는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서류 미제출시 심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자동 제출 서류	1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	온라인 신청시 전자서명을 통한 자동제출 서류 * 공동대표기업은 전자서명이 불가하여 1~4번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우편제출하실 것
	2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1-2>	
	4	확약서<별첨2>	
필수 서류	5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 홈택스(www.hometax.go.kr)	
	6	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만 인정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처: 중소기업24 (www.smes.go.kr)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 발급처: 국세-홈택스 (www.hometax.go.kr) / 지방세-정부24 (www.gov.kr) -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8	이전대상기술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등록원부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처: 특허로 (www.patent.go.kr) - 연차료 납부 및 권리관계 등 사전확인, 출원 중인 기술은 출원사실증명원 제출	
	9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 양도인, 매수인, 중개기관*의 서명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원본대조필 날인) * 중개기관의 중개사실에 관한 사항이 '기술이전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술이전계약서 사본과 '중개사실확인서' 보완제출	
	10	기술료·중개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11	확약서(공동권리자용)<별첨3> 및 동의서<별첨1-1, 별첨1-2> - 기술의 권리가 다수인 경우에만 제출 - 확약서(공동권리자용)<별첨3> 및 공동권리자의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1-2> 필수 제출(원본 등기우편 제출 必)	

나 신탁기술 제출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필수 서류	1	기술신탁관리기관 사업참여동의서<별첨4> -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직접 작성 * 해당기관이 사업수행기관(기보 기술거래보호부)에 직접 제출 가능 - 기술신탁관리기관이 '기보'일 경우 제출 생략 가능
	2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 및 추진 결과<별첨5> -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직접 작성 * 해당기관이 사업수행기관(기보 기술거래보호부)에 직접 제출 가능 - 기술신탁관리기관이 '기보'일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다 파산기술 제출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필수 서류	1	해당 회생법원의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 파산관재인이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 자산을 매각·처분함을 증명하는 공식문서

6 선정 및 통보

□ 서류접수 및 요건검토

- **(서류접수)**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접수 처리
- **(요건검토)** 지원대상,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 등 기본요건 사전 검토 및 기술이전계약서,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 등 제출서류 확인
- 제출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선정제외 처리되며, 제출 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대상으로 추천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평가방법)** 기보 내·외부 전문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신청기술 유형별 심의 진행
 -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

- **(선정통보)** 선정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결과 통보
 - 선정기업은 결과 통보 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통장사본 등 중개수수료 지원금액 지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
 -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중개수수료 지원금액 지급

7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비 지급시점에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근 1년 이내에 동 사업 신청기술과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타 정부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사실 또는 신청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함
- 동일기술의 매매 또는 전용실시권 허여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은 본 사업기간 내 1회에 한함
- 본 사업기간 내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원부에 통상실시권을 신규 등록하거나 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원 가능함
 - 단, 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이 기 설정되어 있거나 권리자 동의없이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동일기술에 대한 복수의 통상실시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원은 1건의 기술이전 계약과 동일한 지원한도(최대 1천만원)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 단, 동 사업(舊.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함
- 기보는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기업에게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의 사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원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기보와 사전협의 및 관련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며, 사업비 지급 시까지 이전대상 기술의 권리관계*를 유지해야 함
 - * 대상기술의 등록원부 상 연차료 납부기한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신탁기술은 기술신탁관리기관과 별도 협의)
- 사업 진행 상황 안내 등을 위해 신청기업 담당자의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필히 기재

□ 기타 유의사항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또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중기부 및 사업수행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선정취소, 제재,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향후 3년간 기보의 이력관리,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에 따라 선정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8

문의처

- (사업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 051-606-7489, 7419 ✉ transfer@kibo.or.kr
- (우편 제출처)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8층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 참고자료 및 관련서식

< 참고자료 및 관련서식 >		
참고1	2026년도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지원요율 최고한도	
참고2	스마트 테크브리치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참고3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붙임1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공동제출
별첨1-1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2	확약서(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	
별첨3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확약서(공동권리자용)	
별첨4	기술신탁관리기관 사업참여동의서(기술신탁관리기관용)	신탁기술
별첨5	기술이전 중개활동 내용 및 추진 결과	
붙임2	이의신청서	

참고1

2026년도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지원요율 최고한도

2026년도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내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지원요율 최고 한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관련근거)

- 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사업 추진계획 승인(중기부, '26.01.13.)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관리지침

□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지원요율 최고 한도) 6.5%

- (산정근거) '25년도 기술보증기금이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기술이전 계약건의 평균 중개수수료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스마트 테크브릿지 온라인 신청방법

①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확인

-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s://tb.kibo.or.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고문 등을 통해 사업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요건, 제출서류 등 확인

② 신청서 웹페이지 입력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경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 및 공모 > 정부지원사업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신청형태(온라인)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제출서류) 연번별로 개별 파일 구분 및 파일명을 서식명으로 일치시킨 후 업로드

③ 전자서명 진행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사전 준비사항 :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등

(법인기업) 법인 사업자 인증서 및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등

- * (유의사항) **공동대표기업 및 공동권리기술은 전자서명이 불가하므로** 온라인 서류 제출 후 일부 원본서류 우편 송부

④ 최종 제출

- 최종 확인 후 제출(제출서류 중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 자격 상실)

□ 유의사항

- ☞ 제출 완료된 사업 참여 신청건은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하므로, 작성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필히 점검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 각 회차 신청 마감일(1차: 6.12., 2차: 11.30.) 18시까지 “제출”이 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 제출 완료 부탁드립니다.

참고3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인터넷)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main)
(경로: 고객마당 > 반부패신고센터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유선) 051-606-7551, 051-606-7563, 051-606-7568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일반기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시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이 메 일		
	본 사 주 소				
	업 종 분 류		주 요 제 품		
담 당 자	성 명		직 위		
	전 화 번 호		이 메 일		
계 약 내 용	이 전 기 술 명				
	기술이전 형태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input type="checkbox"/> 전용실시권 <input type="checkbox"/> 통상실시권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 술 보 유 자		유 형	<input type="checkbox"/> 대학 <input type="checkbox"/> 공공연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기 술 인 수 자	(신청기업)	계 약 일 자	20 . XX. XX.	
	기 술 료	(원)	중 개 수 수 료	(원)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 작성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별첨서류 : 1.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
 2. 확약서 (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 <별첨2>
 3. 확약서(공동권리자용) <별첨3, 해당시 제출>

<별첨1-1>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귀중

당사의 20 . . . 자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 지원신청[기보가 기보의 업무를 참여기관 등(이하 '업무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 업무수탁기관의 수탁 업무 포함]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당사의 기업정보를 기보와 업무수탁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본 사업의 운영·관리, 신청기업 확인,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 검토, 신청기업 지원정보 관리 -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위 기업정보는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수행,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집항목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자 정보, 기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정보 위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기타 정책수립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성과분석, 실적분석, 정책수립, 만족도 조사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기보 및 '제공받는 자'가 운영하는 본 사업의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항목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기보가 위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받는 자가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년 월 일

기업체명 :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별첨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귀중

귀 기관과의 20 . . . 자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본 사업의 운영·관리, 신청기업 확인,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 검토, 신청기업 지원정보 관리 -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위 개인정보는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수행,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등
일반개인정보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기술이전 중개 업무가 종료되어 개인정보가 보안조치된 경우 해제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 및 귀하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정보도 수집·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 기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 인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별첨2> 확약서(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

확 약 서 (중소기업용)

(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

기술보증기금 귀하

본인은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기술에 대하여 ‘지원제외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귀 기금에 제출한 신청서류는 「기술이전법」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의 기술중개에 따른 유효한 기술이전 계약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어떠한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사실 또는 신청 중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만일,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향후 귀 기금으로부터 본건 신청 건에 대한 취소, 지원중단 및 환수, 민·형사 상의 여타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신청 기술명	
산업재산권 등록(출원)번호	
기타(산업재산권이 없는 경우)	(예)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문서(요구사항정의서, 시험절차 및 결과서)

< 지원제외 대상 요건 사전확인 >	
①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등록원부 등 공적장부에 전용실시권 등 독점적 실시에 관한 권리가 설정된 기술(단, 기술보유자 동의하에 전용실시권이 이전된 건은 신청가능)	여 / 부
② 질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술	여 / 부
③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여 / 부
④ 고소·고발, 소송, 심판, 강제집행, 조정, 중재 등 사법 또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여 / 부
⑤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공동권리자인 경우 확약서를 징구하여 신청 가능)	여 / 부
⑥ 신탁기술의 매수자가 신탁기술 보유자의 관계기업인 경우	여 / 부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별첨3>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참여 협약서(공동권리자용)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협약서 [공동권리자용]									
신청 사업명	2026년도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특허등록번호	10-0000000	권리자	000						
발명의 명칭									
<p>본인은 위의 기술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항을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 padding: 5px;">항목</th> <th style="padding: 5px;">동의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1. 위 기술의 이전에 동의하였음</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여 <input type="checkbox"/>부</td> </tr> <tr> <td style="padding: 5px;">2. 동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함</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여 <input type="checkbox"/>부</td> </tr> </tbody> </table>				항목	동의여부*	1. 위 기술의 이전에 동의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2. 동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항목	동의여부*								
1. 위 기술의 이전에 동의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2. 동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p>* 각 항목의 동의여부가 모두 '여'인 경우에 동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기술보증기금에 요청 부탁드립니다.</p>									
<p>2026년 0 월 00 일</p>									
<p>권리자(기관/기업)</p> <p>기업명 : _____</p> <p>대표자 : _____ (인)</p> <p>주소 : _____</p> <p>연락처 : _____</p>		<p>권리자(기관/기업/개인)</p> <p>기업(개인)명 : _____</p> <p>대표자(성명) : _____ (인)</p> <p>주소 : _____</p> <p>연락처 : _____</p>							
<p>※ 첨부서류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 서식></p>									
<p>기술보증기금 귀중</p>									

※ 법인기업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인 경우는 개인인감 날인

※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기재

<별첨4> 기술신탁관리기관 사업참여동의서

기술신탁관리기관 사업참여동의서 [기술신탁관리기관용]

기술보증기금 귀하

본 기관은 2026년도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기술에 대하여 사업 참여에 동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기 업 명		대 표 자	
신 청 기 술 명			
관련 산업재산권 등록(출원)번호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예) 기술보증기금

대 표 자 : (예) 이사장 000

위 대리인 : (예) 지점장 000 (인)

(소관: (예)00기술혁신센터)

※ 첨부서류 :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 및 추진결과<별첨5 서식>

<별첨5> 기술이전 중개활동 내용 및 추진 결과

기술이전 중개활동 내용 및 추진 결과				
(필요시 칸 추가하여 자유 양식으로 작성)				
추진내용	일자	활동구분	대상기관명	활동내용 및 결과
	2022.01.01	기술탐색	특허청	특허정보넷을 활용한 신청기술 탐색
	2022.01.12	기술탐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활용한 신청기술 탐색
	2022.02.15	기술협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매칭된 기술에 대하여 발명자, 사업화 담당자와 기술이전 협의
	2022.03.20	기술협의	한국전자부품연구원	매칭된 기술에 대하여 발명자, 사업화 담당자와 기술이전 협의
	2022.04.22	계약협의	한국전자부품연구원	기술이전 범위, 실시료 등 이전조건 협상
	2022.05.25	계약협의	한국전자부품연구원	기술이전 조건 협상 실패
추진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 배경 <li style="padding-left: 20px;">- ○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 결과 <li style="padding-left: 20px;">- ○ 기타 사항 <li style="padding-left: 20px;">- 			

